

제255회 정례회  
2006.12.14(목)

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기획행정위원회  
전문위원 연기봉

#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필용 · 한창동 · 김법기 · 최미애 · 이규완 · 이언구  
최광옥 · 이대원 · 김화수 · 김환동의원(10명)

## 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## 3. 제안이유

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· 효율성 ·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가.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,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3가지의 경우로 제한함(안 제4조제1항).

나. 금고지정은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고, 특별회계와 기금은 설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함(안 제4조제2항).

다.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함(안 제5조).

라. 금고지정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, 도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,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, 금고업무 관리 능력, 도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기준으로 함(안 제6조)

마. 금고지정 방식 결정,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·심의·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둠(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).

바.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도의원,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, 관계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함(안 제7조제3항)

사.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며,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함(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)

아. 금고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지정하도록 함(안 제8조 제4항)

## 5. 검토의견

가.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은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·효율성·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금고지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「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」에 부합하게 제정되었음.

붙임 : 충청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